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7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 맹성규·강득구·김민석

남인순 · 안규백 · 유동수

이상민 • 이성만 • 이수진(비)

정춘숙 · 황운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대상시설 및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하는 이른바 BF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BF인증 대상이 주로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최초 인증후 재인증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BF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를 위한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
-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

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 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 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 득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 왕 <u><신 설></u>	제17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 다)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
	은 건축물(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 감반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인

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 득세를 경감받은 경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 오

-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
-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 감받은 건축물 중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인증 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건 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 세를 추정한다.